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53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.

발 의 자:양금희·김영식·지성호

김기현 • 유의동 • 서일준

유창현 • 유두현 • 김예지

태영호 • 이주환 • 송언석

전봉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,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.

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·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가능해졌고, 특히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.

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건수가 2016년 47건, 2017년 57건, 2018년 53건, 2019년 45건, 2020년 7월 현재 49건으로 증가하였고, 조정성립률 도 2019년에 43%에 이르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 김 하고 있음.

그러나 아직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,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'심판-조정 연계제도' 도입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「특허법」 제164조의2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2조의2 및 「상표법」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제49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4854호), 「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 856호) 및 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5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발명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) 「특허법」 제164조의2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2조의2 및 「상표법」 제151 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며, 제43조제3항의 "조정신청이 있는 날"은 "위원회에 회부된 날"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9조의3(심판과 조정의 연계
	특례) 「특허법」 제164조의2 <u>,</u>
	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
	인보호법」 제152조의2 및
	「상표법」 제151조의2에 따라
	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
	해서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
	<u>청으로 보며, 제43조제3항의</u>
	"조정신청이 있는 날"은 "위원
	회에 회부된 날"로 본다.